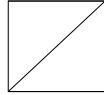


공개



의안번호	제 4 호	심 의 사 향
심 의 연 월 일	2015. 4. 29 (제 13 회)	

201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 영 위 원 회

제 출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제출 연월일	2015. 4. 29.

1. 심 의 주 문

- 「201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 안 이 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201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개 요

- (목적) 2016년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 실시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
 - ※ (법적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16년 성과평가 추진 기본방향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5.4, 국과심)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를 추진
 - * ① 연구자 중심의 평가지원체계 강화 ② 질 중심 평가강화로 우수성과 창출 ③ 평가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④ 연구개발정책·투자전략·예산의 연계를 통한 조정기능 강화 ⑤ 평가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와 평가기반 고도화
 - 제3차 기본계획 중 '16년 추진내용을 우선 반영*하고, 이후 추진 내용은 단계적으로 실시계획에 반영
 - * 논문 단순 양적건수 중심 평가 지양, 연구기관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평가 강화, 기관평가와 지원예산의 연계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1) 성과목표·지표 점검

- 사업별 **성과목표·지표**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에 근거하여 **적절성을 점검**

* 성과평가법에 의해 설치된 「성과지표심의위원회」에서 확정('14.12.)

- 논문건수 지표설정은 지양하고 질적 지표 비중 60%, 사업화 목적 사업은 사업화 지표 비중 50% 이상 설정

(2) 중간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의 적절성을 미래부가 점검

- 대상사업: 17개 부처 82개 연구개발사업('15년 예산 3.3조원)

※ 일정: 소관 부처 자체평가('16.1~3), 미래부 상위평가('16.4~6)

- 성과목표·지표 점검 결과와 연동하여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 유도

※ 성과목표·지표 부적절 사업은 목표달성도 획득 점수의 일부만 인정

(3) 종료·추적평가 및 특정평가

- 사업 종료 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종료평가), 종료 이후 **성과의 활용·확산 및 파급효과** 등을 점검(추적평가)

- 종료평가 대상사업 : 7개 부처 16개 연구개발사업(총사업비 1.5조원)

- 추적평가 대상사업 : 2개 부처 2개 연구개발사업(총사업비 253억원)

※ 일정: 소관 부처 자체평가('16.4~8), 미래부 상위평가('16.9~11)

- 과학기술 이슈 및 분야 중심의 **정성적·정량적 심층분석** 강화를 통해 R&D 재정부 운영 방향에 반영(특정평가)

※ 구체적 평가대상 사업은 '15.11월까지 제시(성과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연구기관 평가

(1) 평가 대상 연구기관(총 45개 기관)

- 연구회 소속 25개 기관, 부처 직할 20개 기관 등 총 45개 기관

※ 전년대비 1개 기관(울산과학기술대학교) 증가 * '15년 44개 기관

(2) 임무중심형 평가

-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기관장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수립 및 점검 완료

- 연구기관은 기관장 취임 후 초안을 작성하고, 미래부 및 소관 부처/연구회의 점검을 거쳐 '경영성과계획서' 최종 확정

※ 단순 논문 건수 제외 등 기관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

- (**중간컨설팅평가**) 경영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장 임기 중 **중간 성과 점검 및 미래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중간컨설팅평가 실시

※ 중간컨설팅평가 결과는 종합평가시 경영부문 평가점수의 30% 비중으로 반영

- (**종합평가**) '13~'14년 상반기에 임무중심형평가로 전환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정도*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목표치 달성도 및 달성된 성과의 우수성, 목표 달성과정의 적절성 등을 평가

(3) 공통기준형 평가(기존방식)

- 평가대상 연구기관의 '15년도 경영실적을 점검·평가

- 전년대비 평가항목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주요내용*을 평가에 포함

*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노사관계 합리성 등

4. 참고사항

- 관계부처 협의 완료('15. 3. 26.~ 4. 2.)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평가전문위원회 사전 검토('15. 4. 17.)

201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2015. 4

미래창조과학부

목 차

I. 개 요	1
II.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세부계획	4
III. 연구기관 평가 세부계획	17
< 붙임 1 > '16년도 중간평가 대상 사업(안)	34
< 붙임 2 >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36
< 붙임 3 >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내용	43

I 개 요

□ 목 적

- 2016년에 시행할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및 기관평가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 법적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성과평가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설립·육성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과기분야 정출연법)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성과평가법 제5조제2항)

□ 추진 경과

-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평가 실시('97, 舊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 과학기술기본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조항 규정('01)
- 국가연구개발 관련 성과평가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 마련('05)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06~'10)」 수립('06)
-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1~'15)」 수립('11)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 수립('13.10)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4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 ('14.12, 성과지표심의위원회)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수립('15.3)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 수립('15.4)

□ 중점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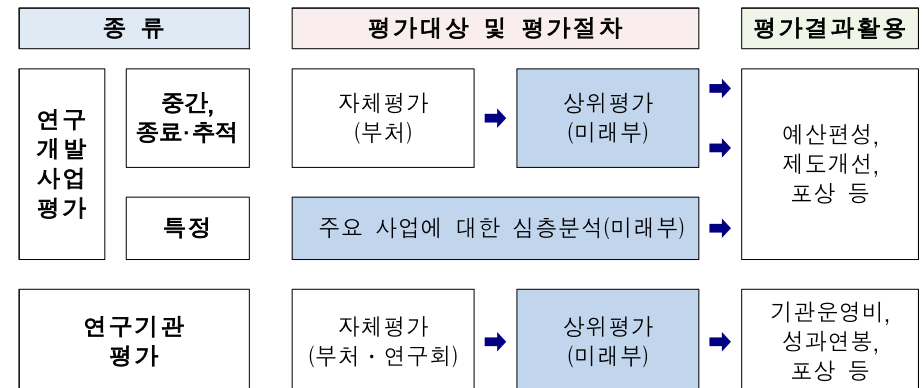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

- (중간평가) 질적 지표 중심의 평가 및 성과에 대한 전문가 사전 검토를 통해 정성평가 강화
 -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14.12)를 바탕으로 질적 성과지표를 설정토록 유도하고 성과목표·지표 적절성 점검
- (종료·추적평가) 추적평가(성과활용·확산 실적 점검)를 고려하여 종료평가(성과활용·확산 계획 점검) 추진
- (특정평가) 국가 주요 현안 이슈 및 분야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평가결과 제시
 - ※ 구체적 평가대상 사업은 부처협의를 거쳐 '15.11월까지 확정

【 연구기관 평가 】

- (임무중심형 평가) 기관장 취임시기에 따라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중간컨설팅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 '13년 하반기~'14년 상반기에 임무중심형평가로 전환한 연구기관에 대해 '16년에 최초실시
- (공통기준형 평가) 연구기관의 경영실적('15)을 점검·평가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



〈 '15년 대비 '16년 제도개선 및 평가주안점 내용 〉

부문	'15년 실시계획	'16년 실시계획
연구개발사업평가	【성과목표·지표 점검】 ○ 실시계획에서 질적지표, 사업지표 비중 미제시 【중간평가】 ○ 평가위원회별 소관사업 검토 방식의 평가 진행 ○ 평가 결과를 주로 사업예산과 연계 활용 【종료·추적평가】 ○ 종료평가 시범실시('14)→본격화('15) ○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활용·확산, 파급효과 평가 (추적평가) 【특정평가】 ○ 다부처공동사업, 중간평가 '미흡' 사업, 예타사업 이행점검 등의 비효율성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성과목표·지표 점검】 ○ 질적지표 비중 60%, 사업화지표 비중 50% 이상 설정 【중간평가】 ○ 성과에 대한 전문가 사전 검토 후, 평가위원회 평가로 정성평가를 강화 ○ 평가 결과를 사업예산 및 사업구조 개편에 적극 활용 【종료·추적평가】 ○ 사업의 최종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확인·점검 강화(종료평가) ○ 재평가 수준의 평가를 지양하고 적절성 점검 강화를 통해 부처 평가 자율성 확대(추적평가) 【특정평가】 ○ 과학기술 정책 지원을 위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심층분석 범위 확대 ○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실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 구체적 평가 대상 사업은 '15.11월까지 확정
연구기관평가	【임무중심형 평가】 ○ 중간컨설팅평가가 실시 방안 마련 ○ 종합평가 실시 개요 제시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반영 【공통기준형 평가】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반영	【임무중심형 평가】 ○ 단순 논문 건수 제외 등 기관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 ○ 목표 미달성의 경우도 대표 연구성과, 도전성 등을 고려 정성평가 실시 ○ 평가배점 조정(성과창출·활용 확산 배점 확대(20→30) 등] 【공통기준형 평가】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반영 지속

II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세부계획

2-1 성과목표·지표 점검

-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에 대한 적절성 점검
- 각 부처는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조하여 사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미래부에 제출('15.6)
-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14.12,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개별법령에 근거한 각종평가의 평가기준 개선 추진」('14.2, 국무조정실)
- ※ 논문의 단순 양적건수 지표 설정은 지양하고, 질적지표 비중은 60% 이상, 사업화 목적 사업의 사업화지표 비중은 50% 이상으로 설정
- 미래부는 점검단을 구성하여 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을 점검
- (점검 방법) 기본사항,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 3가지 항목별로 점검
- 항목별 점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해당 항목을 '적절'로 판정하고, 그 외의 경우는 '부적절'로 판정
- (결과 활용) 점검 결과는 사업평가 시 목표달성도 평가와 연계
- 해당 항목이 '적절'하면 사업의 목표달성도 점수를 그대로 인정, '부적절'하면 사업의 목표달성도 점수를 일부만 인정
- ※ 기본사항 또는 성과목표 부적절 : 사업이 창출한 전체 목표달성도 점수 일부(예: 10%) 불인정
성과지표 부적절 : 해당 성과지표가 창출한 목표달성도 점수 일부(예: 50%) 불인정

〈 성과목표·지표 점검 항목 및 기준 〉

항 목	점검 기준
기본사항	• 사업 유형 구분의 타당성 • 성과목표·지표 설정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설정 절차 준수 • 전략목표-성과목표의 논리적 연계성
성과목표	• 성과목표(단계별 성과목표 포함)의 구체성 • 성과목표(단계별 성과목표 포함)와 사업 기간과의 부합성 • 성과목표(단계별 성과목표 포함)와 사업 추진 방식과의 부합성
성과지표	• 성과목표(단계별 성과목표 포함)와의 연계성 • 사업유형 및 이력과의 부합성 • 측정 방법의 타당성 • 질적 지표 중심 설정 여부 • 가중치 및 목표치의 합리성

2-2 중간평가

가. 개 요

□ (개요) 부처가 추진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및 성과 등 전반적 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

- 부처 '자체평가' → 미래부 '상위평가' 과정으로 실시
 - 부처는 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미래부는 부처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 및 확인·점검을 실시

□ (대상사업) '15년에 시행된 17개 부처 82개 사업('15년 예산 3조 3,383억원)

- 전체 연구개발사업(780개)에서 평가 제외 사업*(299개)을 뺀 나머지 사업(481개) 중 평가 주기**가 도래한 사업을 선정

* 인건비 등 경상적 행정경비, 출연(연) 지원금, 평가관리 및 정책연구 등

** '09년부터 3년 주기 평가 실시(매년 평가 대상사업은 전체 사업의 1/3 수준)

※ 평가단위는 세부사업(국방분야는 보안 등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사업으로 평가) (평가대상 사업은 사업개편, 사업내용 수정 등을 반영하여 추후 변경 가능)

《 사업특성별 중간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사업 특성	선정기준
기초분야	● 기초분야 사업은 사업 착수 4년 후에 첫 번째 평가 실시 ※ 성과목표·지표 점검 결과에 따라 기초 사업으로 확정된 신규 사업에 적용
소액사업	● 15억원 이하 소액사업은 평가실효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만 실시 ● (대상)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이 15억원 이내인 사업
회계가 다른 동일사업	● 동일 사업으로서 회계가 분리된 사업은 자체평가부터 통합평가 실시 ● (기준) 사업목적·내용 및 관리기관이 동일하고 성과목표·지표가 동일한 경우
다부처공동 기획사업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자체평가부터 통합평가 실시 ● (평가방식) 사업 공동 목적에 부합하는 공통 성과지표와 부처간 역할에 따른 개별 성과지표에 의해서 평가
기타	● 수정평가 사업('15년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 중 부처가 평가를 요청한 사업)은 평가 대상으로 추후 포함 ● '16년 특정평가 대상('15.11월 선정 예정)은 중간평가 대상에서 제외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원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1년 주기)와 미래부(3년 주기)의 평가 주기를 고려하여 평가 중독 최소화

나. 평가절차 및 체계

□ 평가절차

구 분	평가 절차										
자체 평가 (1~3월)	자체평가 실시 (각 부처)	⇒	결과 확정 (각 부처)	⇒	결과 제출 (부처→미래부)						
상위 평가 (4~6월)	자체평가 결과 접수	⇒	상위평가 실시	⇒	상위평가 결과(안) 부처 통보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상위평가 결과 확정	⇒	상위평가 결과 부처통보, 국과심· 정평위 심의 및 국회 소관 상임위 제출

□ 추진체계

- (자체평가) 부처는 소관 사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실시(1~3월)

※ 자체평가 종료 뒤 자체평가보고서, 근거자료, 적절성 점검 자료를 미래부로 제출(∼3.31)

- (상위평가) 미래부는 상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상위평가 실시(4~6월)

다. 평가항목 및 점수·등급 부여

【 자체평가 】

□ (평가항목) 관리, 결과·환류 부문 등 4개 지표로 평가

- (관리)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 관리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수행 내용을 점검

-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관리(사업 목표, 내용 변동 등)의 적절성 및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등을 평가
- 다부처 공동 사업은 부처 간 협업의 적절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이행 여부를 추가로 평가
- (결과·환류)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 우수성 등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의 사업 개선 반영 여부를 점검
-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목표의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대표 성과의 타월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
- 과거 평가 결과 및 유사·중복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과 사업에 반영 여부를 평가

※ 부처에 既 배포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활용결과를 실적에 반영 가능

《 자체평가 지표 및 배점 》

항목	평가지표	배점(점)	
		일반	시설 장비
관리	•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관리가 이루어졌는가?	15	15
	•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였는가?	-	40
결과 · 환류	• 계획된 성과목표는 달성하였는가? (성과목표·지표 사전 점검 결과 연계)	30	30
	•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사업은 효과가 있었는가?	45	-
	• 평가결과 등을 사업개선에 반영하였는가?	10	15

※ 추후 '자체평가 지침' 마련 시,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의 일부 조정 가능

□ (평가등급 산출)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사업별로 5단계 등급화

《 평가 등급 》

등 급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점수(점)	90 이상	90미만 ~ 80이상	80미만 ~ 65이상	65미만 ~ 50이상	50 미만

【 상위평가 】

□ (적절성 점검) 자체평가의 평가과정, 평가근거, 평가결과 등 3개 항목에 대한 적절 여부를 판단

○ 3개 항목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부가 **부처 사업별로 확인·점검**을 실시

* 적절성 점검을 통해 자체평가 결과가 인정된 경우에도 개선·권고사항 제시 가능

《상위평가 점검 항목 및 기준 》

항 목	점검 기준
자체평가 과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 자체평가 형식요건 준수 여부 • 종합적 사업 분석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등
자체평가 근거	• 근거자료의 양적·질적 충실성 • 자체평가 의견의 구체성·명확성 • 등급부여의 부합성·타당성 등
자체평가 결과	•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여부(관대화 방지 등) - (등급 배분 의무화 적용 부처) 등급배분 기준 준수, 소규모 사업이나 종료 예정 사업에 미흡 이하 등급 편중 등 * 평가대상 사업 수 6개 이상 부처에 적용 - (등급 배분 의무화 미적용 부처) 평균 점수 적절성 등

※ 추후 '자체평가 지침' 마련 시, 적절성 점검 항목 및 기준 조정 가능

□ (확인·점검) 적절성 점검 미충족 부처의 사업은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미래부가 지표별로 확인·점검을 실시

○ 자체평가에 사용된 4개 지표로 해당 사업에 대해 확인·점검을 수행하고, 자체평가와 동일하게 5단계 등급화

※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점수 및 등급 조정

【유의 사항】

- 자체평가에서 제출되지 않은 성과는 상위평가에서 불인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9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미등록된 성과는 불인정

【가점/감점 부여: 상위평가에서 적용】

- 국제 표준 채택, 표준특허 등록,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혁신도약형 사업 등에 가점 부여
- 과제 수행 관련 연구비 용도 외(횡령 등) 사용 등으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있는 경우에 감점 조치

2-3 종료평가

가. 개 요

- (개요)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목표의 달성도와 성과활용·확산 계획에 대해 평가
 -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 다음해에 실시하나, 후속사업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사업 종료 1년 전부터 실시 가능
 - 부처 '자체평가(4~8월)' → 미래부 '상위평가(9~11월)' 과정으로 실시
 - 부처는 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미래부는 부처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 및 확인·점검을 실시
- (평가대상*) '15년에 종료된 7개 부처, 16개 사업

* 출연(연) 지원금, 정책연구 등과 같이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며, 소액사업(3년 총사업비 합계 45억원 이하)은 자체평가만 실시하고 상위평가 제외

《 종료평가 대상 사업 》

부처명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미래부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4,038	'11~'15
	SMART 건설관련 안전성 향상 연구	293	'12~'15
	ICT기술사업화기반구축	205	'14~'15
법무부	DNA감식 국산화 및 선진화	53	'14~'15
농식품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 건립	246	'13~'15
산업부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지원	974	'11~'15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기반구축	1,493	'11~'15
	동물약품허브조성	266	'13~'15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1,225	'11~'15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	952	'11~'15
	4000MVA대전력시험설비증설	1,196	'11~'15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	1,871	'11~'15
	탄소밸리구축	1,991	'11~'15
복지부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	189.3	'12~'15
농진청	이공계대인턴쉽운영	421	'08~'15
기상청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74	'11~'15
합 계		15,487.3	

나. 평가항목 및 점수·등급 부여

【 자체평가 】

- 사업목표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 성과관리체계의 적절성, 성과활용·확산계획의 적절성 등 4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평가
 -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에 대한 평가 강화
 - ※ 부처에 既 배포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활용결과를 실적에 반영 가능

《 자체평가 지표 및 배점 》

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목표 달성도(80)	사업목표 달성도	최종목표 달성 여부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	40
	성과의 우수성	성과의 질적 우수성 및 사업목표와의 연관성·핵심성 등	40
성과 활용·확산 계획(20)	성과관리체계의 적절성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 등	10
	성과활용·확산 계획의 적절성	성과 활용·확산을 위한 활동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등	10

※ 추후 '자체평가 지침' 마련 시,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의 일부 조정 가능

- (평가등급 산출) '2-2 중간평가'와 동일하게 5단계 등급화

【 상위평가 】

- (적절성 점검) 자체평가의 과정, 근거, 결과 등에 대한 적절성 점검

《 상위평가 점검 항목 및 기준 》

구분	항목	점검 기준
적절성 점검	자체평가 과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 자체평가 형식요건 준수 여부 • 사업별 종합분석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
		• 근거자료의 양적·질적 충실성 • 자체평가 의견의 구체성·명확성 • 평가의견과 등급부여와의 부합성
		•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변별력·신뢰성 등)
	자체평가 결과	

- (확인·점검) 자체평가 평가지표에 따른 확인·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별 현장 방문점검 수행
 - 부처가 구체적인 성과활용·확산 계획을 작성하도록 확인·점검하여 추적평가지 실효성 있는 근거자료 확보

2-4 추적평가

가. 개 요

□ (개요) 연구개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의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 등 연구 성과의 활용·확산에 대해 추적조사·평가

- 사업종료 후 5년 이내에 추적평가 실시
- 부처 '자체평가(4~8월)' → 미래부 '상위평가(9~11월)' 과정으로 실시
 - 부처는 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미래부는 부처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 및 확인·점검을 실시

□ (평가대상) 2개 부처 2개 사업*

* '10~'11년에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출연(연) 지원금, 정책연구, 인건비성 경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부처와 협의하여 확정

《 2016년 추적평가 대상사업 》

부처명	사업명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복지부	국립한방임상센터건립	80	'08~'10
환경부	지구환경연구동 신축사업	172.8	'08~'10
합 계		252.8	

나. 평가항목 및 점수·등급 부여

【 자체평가 】

□ 사업 종료 이후 성과관리·활용체계, 사업성과 활용·확산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

- 창조경제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 활용·확산 결과 및 파급효과 배점 확대*

* 성과 활용·확산 결과 및 파급효과 배점 : '15년 40 ⇒ '16년 50

※ 부처에 既 배포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활용결과를 실적에 반영 가능

《 자체평가 지표 및 배점 》

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 활용·확산 및 관리 (50)	성과 활용·확산 체계의 적합성	성과 활용·확산 체계의 적절성, 체계개선 노력 등	20
	성과관리 체계의 적합성	성과관리 체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등	15
	성과활용 결과 수집의 적절성	주요성과 관리항목의 적절성, 성과 수집·처리 적절성 등	15
성과 활용·확산 결과 및 파급효과 (50)	성과 활용·확산 결과의 우수성	성과활용·확산 촉진활동, 결과의 우수성 등	25
	성과활용·확산 결과의 파급효과 우수성	성과분석의 적절성, 파급효과 유형의 적절성 등	25

※ 추후 '자체평가 지침' 마련 시,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의 일부 조정 가능

□ (평가등급 산출) '2-2 중간평가'와 동일하게 5단계 등급화

【 상위평가 】

□ (적절성 점검) 자체평가의 과정, 근거, 결과 등에 대한 적절성 점검

《 상위평가 점검 항목 및 기준 》

구분	항목	점검 기준
적절성 점검	자체평가 과정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 자체평가 형식요건 준수 여부 • 사업별 종합분석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
	자체평가 근거	• 근거자료의 양적·질적 충실성 • 자체평가 의견의 구체성·명확성 • 평가의견과 등급부여와의 부합성
	자체평가 결과	•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 평가결과의 변별력·신뢰성 등

□ (확인·점검) 자체평가 평가지표에 따른 확인·점검 실시

- 재평가 수준의 확인·점검 방식을 지양하고, 적절성 점검을 강화하여 부처 자체평가의 자율성·신뢰성을 제고

2-5 | 특정평가

가. 개요

□ (개요) 과학기술 정책 이슈 및 사업간 조정이나 연계 등이 필요한 사업을 미래부가 직접 선정하여 성과를 심층분석

※ 사업별 추진체계 효율성 및 성과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중점 심층분석하고, 정량적·정성적 심층분석 결과를 통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

□ (평가대상 선정) 특정평가 대상 기준(성과평가법 제7조제1항), 정부 정책 및 예산편성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5.11월까지 선정하여 공시

※ 성과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성과평가 중 특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연구개발사업은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을 고려하여야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30일까지 마련할 수 있다.

《 사업유형별 특정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

사업유형	선정기준
장기간·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 5년 이상, 연간 100억원 이상 예산 투입여부, 정책목표와 사업목적 부합성, 성과 점검을 통한 사업 효율성 개선 시급성
사업간 조정 및 연계 필요사업	• 타 사업과 유사 지원부분에 대한 조정 및 개선 필요성 • 타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
다부처 공동 추진사업	• 다부처 공동기획 내용의 적절성 • 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의 적절성
국가적·사회적 현안 사업	• 최근 과학기술 정책 이슈와의 부합성, 대내외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조정 및 개선 필요성, 현안대응 미흡 여부 등
기타 심층분석 필요사업	• 중간평가 결과 또는 국회·감사원 지적 등에서 심층분석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 잦은 사업 개편 등 사업 성과 관리 별도 점검 필요성

나. 평가 방향 및 주요관점

□ 과학기술 이슈 및 분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 결과 제시

○ 효과적인 과학기술 정책 지원을 위해 주요 사업(군)에 대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심층분석 범위 확대

* 적절성·효과성·효율성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외에 경제·사회문제 해결 및 과학기술 정책수립·조정을 위한 심층평가 강화

※ 중간평가 결과 '미흡' 사업,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및 방향을 명확히 제시

○ 최근 현안으로 제기된 이슈·기술분야 등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심층분석 강화를 통해 R&D 재정부운행 방향*에 반영

* 사업간 유기적 연계·협력 도모,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중장기적 R&D투자 효율화 방안 제고

□ 사업성과의 효과성 제고 및 실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평가 전략 다양화

○ 사업성과의 체계적인 관리, 사업목표 달성 및 성과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

* 특정평가 결과 조치계획 미 이행 또는 부적절 시 차년도 특정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엄정한 사업개선 유도 및 관리체계 강화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 점검*을 통한 전략적 분석 강화 및 유용성 제고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거나, 국회·감사원 및 예산심의 등에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제기된 사업 등에 대해 점검 가능

○ 연구기관과 연구개발사업간 통합평가 도입 검토·추진

《 특정평가의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
적절성	• 투입 규모·대상 및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 정책 연계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전략목표의 적절성
효과성	• 목표 대비 성과 달성도 • R&D 사업 수행을 통한 기여도(파급효과 등)
효율성	• 투입 대비 산출 규모 및 내용의 적절성 • 산출 성과의 양적·질적 우수성(비교)
체계성	• 사업목표-사업내용-성과의 연계성 • 사업추진결과 수요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충족 여부 • 중복·연계성 및 부처간 역할 및 기능의 체계성 등

2-6 평가결과 활용

【 공통사항 】

- ☐ **(결과 공개)** 평가 결과는 미래부 홈페이지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NTIS) 등에 공개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 ☐ **(포상 및 후속조치)** 우수 등급 사업 관계자에 대해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 사업을 관리한 전문기관 담당자 등에 대한 포상 추천

【 중간평가 】

- ☐ 부처 자체평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상위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년도 예산 및 사업 개편에 적극 활용**
 - 상위평가 결과 ‘우수’ 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 상위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전년대비 10% 이상 감액**, ‘매우미흡’ 판정을 받으면 **전년대비 20% 이상 감액** 및 재기획을 통한 **사업 전면 개편** 또는 필요시 **사업 중단**
 - ※ 재기획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한 경우, 국과심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승인 의무화
 - ‘미흡’ 이하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핵심 과제 중심으로 조정·유도 하며,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을 경우 예산 삭감을 원칙
- * 평가주기(3년) 미도래시에도 부처 요청으로 수행되는 평가
- ※ 상위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사업은 차년도 특정평가 후보에 포함

【 종료평가 】

- ☐ **후속 사업**(유사 사업 포함) 및 **추적평가**에 종료평가 결과를 연계
 - ‘우수’ 사업과 관련한 후속 사업이 연계 추진될 경우, 후속 사업 선정 평가 시 종료평가 결과를 **주요 성과 자료**로 고려
 - 종료평가에서 점검 받은 성과활용·확산 계획서는 향후 추적평가의 근거 자료로 활용

【 추적평가 】

- ☐ 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연도별)성과관리·활용 실시계획에 추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활용을 촉진
-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시 추적평가 결과 활용 및 홍보
 -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 중장기적 파급효과 분석 및 데이터 관리를 통해 향후 유사 연구개발 기획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효과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지식정보 DB 축적
 - 국가·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대국민 홍보

【 특정평가 】

- ☐ 평가결과는 ‘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사업 개선 등에 반영
 - 국가·사회적으로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은 **관련 예산을 증액 조정**하고, 부적절하면 사업 **개편·축소·중단** 등 단계별 조치
 - * 투자 대비 실적 등의 성과를 분석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누락된 사업 등
 - 해당 부처·청은 사업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미래부는 **조치 계획 및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추진
 - * 조치계획의 실효성과 이행실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 ※ 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별 조치계획을 미래부에 제출(4월) → 미래부가 조치 계획을 점검(5월) → 점검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 시 반영(6~7월)

III 연구기관 평가 세부계획

3-1 평가대상 연구기관

□ (평가대상) 평가대상기관은 연구회 소속 25개 기관, 부처 직할 20개 기관 등 총 45개 기관 ('15년 44개 기관)

※ 추가 기관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임무중심형 평가) 기관장 취임 시기에 따라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중간건설팅평가 및 종합평가 시기를 별도 적용

〈 '16년 임무중심형 평가대상 연구기관 〉

부 문	부처·연구회	연구기관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11)	미래창조과학부(6)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보안연구원
	해양수산부(1)	국지연구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녹색기술센터
중간 건설팅 평가 (14)	상반기 (10)	국가과학기술연구회(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하반기 (4)	미래창조과학부(1) 한국보안연구원
		해양수산부(1)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종합평가 (18)	1분기 (2)	국지연구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분기 (4)	미래창조과학부(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고등과학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2)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분기 (7)	미래창조과학부(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해양수산부(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분기 (5)	국가과학기술연구회(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방위사업청(1) 국방과학연구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기관장 임기가 2년으로 중간건설팅평가 없이 종합평가만 실시
 ** 국지연구소는 '16년에 종합평가 실시 후 신임기관장 취임시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예정
 ※ 상기평가일정은 실제 기관장 취임 시기 및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통기준형 평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개 기관, 미래창조과학부 3개 기관 등 총 5개 기관

〈 '16년 공통기준형 평가대상 연구기관 〉

부 문	부처·연구회	연구기관
경영(5)	국가과학기술연구회(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녹색기술센터
	미래창조과학부(3)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나노종합기술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나노종합기술원은 공통기준형 평가 후 '16년에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예정

3-2 임무중심형 평가

가. 개 요

□ 연구기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장 임기 주기에 따른 고유임무 중심의 맞춤형 기관평가 실시

○ '기관장 취임 →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점검 → 중간건설팅평가 → 종합평가 → 환류'의 기관평가 체계 구축

□ 실시 일정

○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기관장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수립 및 점검 완료
 - 연구기관은 기관장 취임 후 초안을 작성하고, 미래부 및 소관 부처/연구회의 점검을 거쳐 '경영성과계획서' 최종 확정
 ○ (중간건설팅평가) 상반기 및 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실시
 ○ (종합평가) 기관장 임기에 맞추어 적절한 평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 4회 실시

- 기관장 임기 만료일을 고려(기관장 임기 만료일 3~4개월 전에 평가결과 확정)하여 분기별로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실시

* 1분기(전년도 12월~당해연도 2월), 2분기(3월~5월), 3분기(6월~8월), 4분기(9월~11월)

《 연간 평가 일정 (안)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경영성과 계획서 수립	연중 실시											
중간컨설팅 평가		자체평가	상위					자체평가	상위			
종합평가	자체	상위	자체평가	상위	자체평가	상위	자체평가	상위	자체			

※ 상기평가일정은 실제 기관장 취임 시기 및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관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평가방안

《 기관장 중도사퇴 시 평가실시(안) 》

사퇴 시기	평가실시방안
~ 경영성과계획서 확정 전	평가 없음 ※ 성과연봉/능력성과급 : 이전 평가 결과 활용
~ 중간컨설팅 착수 전	3개월 이내 경영공통부문 평가 실시 ※ 성과연봉/능력성과급 : 경영공통부문 평가 결과 활용 (‘종합평가’ 평가등급 체계를 준용하여 평가등급을 부여)
~ 임기종료 전	분기별로 있는 종합평가 일정에 실시 ※ 성과연봉/능력성과급 : 종합평가 결과 활용

※ 관계부처·연구회·연구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나.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 개 요

- 세계적 수준의 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대내외 환경 분석 등을 통해 기관장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경영부문과 연구부문의 성과목표를 포함한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 5대 임무유형*을 바탕으로 기관별 임무체계(임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임무별 비중을 제시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13.10.18, 국가심)을 통해 제시된 기관별 고유 임무유형
(①기초·미래선도형, ②공공·인프라형, ③실용화형, ④연구·교육형, ⑤정책연구·지원형)

※ 연구개발 보안 분야는 관계기관의 별도 지침(매년 실시)에 따라 실시

- 추진계획 및 성과목표·지표의 목표치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서술
 - 성과목표·지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를 준용하여 질적 성과 중심으로 설정
- 연구기관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영성과계획서는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

☞ 경영성과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침은 <붙임 2> 참조

-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관련 상세내용은 자체평가 부처·연구회가 마련하여 시행

□ 논문지표 사용 축소·제한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연구 지원 성격의 기관은 논문을 성과지표에서 제외하고, 기관 성격에 맞는 성과지표 수립
- 개별 연구기관의 ‘경영성과계획서’ 수립 시 과학적 성과와 관련이 적은 임무 유형은 원칙적으로 논문을 성과 지표에서 제외
 - 5대 임무 유형 중 ‘기초·미래선도형’을 제외한 타 임무 유형은 논문 이외의 실용화 지표 사용

※ 단, 필요시 논문지표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논문 건수 등의 양적지표 사용은 배제하고, 질적 성과 지표를 활용

① 논문 실적 제외 기관

- (정책연구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녹색기술센터, 원자력통제기술원
- (장비 지원) 나노종합기술원
- (교육 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사업화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② 논문지표 제외 임무유형

- 1) 공공·인프라형(R&D형) 공공연구, 국책사업, 인프라 지원 등
 - 2) 실용화형(R&BD형) 기술사업화, 창업,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 3) 연구·교육형(R&E형) 이공계 우수 인력양성 등
 - 4) 정책연구·지원형(R&P형) 국가정책연구, 국가시책지원 등
- ※ 필요시, 질적 논문지표를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경영성과계획서 점검·확정

- (자체점검) 부처·연구회에서 점검 지침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점검
 - ※ 부처·연구회별로 점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 평가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점검위원회' 위원은 '종합평가' 시 과반수 이상을 유지하며, 기관별로 전담위원 배정
- (정책점검) 미래부는 주요 정책 및 필수항목의 반영여부 등을 확인 (<붙임 3> 참조)
 - ※ 질적 성과지표 사용, 목표치 근거제시 여부 등을 병행 검토
 - ※ 점검 착수 시점에 미래부(평가혁신국)에 경영성과계획서 초안을 제출
- 연구기관은 부처·연구회 및 미래부의 점검 내용을 반영하여 경영성과계획서를 보완한 후 이사회에 상정·확정(최종본 미래부 제출)
 - ※ 경영성과계획서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 주요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재심의하며, 경미한 사항은 자체 위임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이 승인 가능
 - ※ 국방과학연구소는 주무 부처의 승인으로 경영성과계획서 확정 가능

《 자체 점검 내용 (예시) 》

구 분	점검 내용
고유임무 체계	○ 필수 내용의 반영 여부 ○ 세계적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 및 목표 설정 ○ 기관설립 목적·특성과 기관고유임무 체계(임무 포트폴리오)의 적절성 ○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의 논리적 체계성 ○ 출연금사업, 융합·협동사업, 수탁사업 임무비중의 적절성 ○ 연구성과 활용·확산·기술사업화 체계의 적절성 ○ 성과보상 및 환류 체계의 적절성 ○ 자율지표의 기관고유임무 연계성
성과목표·지표	○ 질적 성과지표의 활용(양적 성과지표의 지양) ○ 성과지표의 적절성(대표성, 맞춤형 등) ○ 목표달성도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측정 가능성 ○ 도전적 성과목표·지표의 설정

다. 중간컨설팅평가

□ 개 요

- 경영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기관장 임기 중 중간성과 점검 및 미래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중간컨설팅평가 실시

□ 평가 절차 및 실시 분야

- (평가절차)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 및 미래부의 상위평가로 운영
- (실시분야) 중간컨설팅평가 취지를 고려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부분과 컨설팅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

《 중간컨설팅평가 실시 분야 구분 》

구 분		자체평가	상위평가
경영 부분	공통분야	항목별 평가점수 부여	평가체계 등에 대한 적절성 점검 및 평가점수 확정
	자율분야	중간성과 확인 및 컨설팅	컨설팅 적절성 점검
연구부분		주요 핵심 또는 현안과제 컨설팅	

□ 자체평가

- (경영공통부분) 경영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세부 평가항목(추진계획)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부여
 - 연구기관 성과공개 시스템에 입력된 성과지표별 실적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부처·연구회는 필요시 관련 자료 요청
 - ※ 연구기관 성과공개 시스템(15.11월 오픈 예정)에 자료 미입력 시 해당 지표는 최하 점수 부여
 - '목표달성정도' 평가는 달성정도를 0~100%로 산출하고, '전문가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로 5단계 등급(S~D)으로 평가하여 평가점수 산출

《 '전문가 정성적 평가' 점수별 부여 기준 》

등급	S	A	B	C	D
등급별 평가 점수	1.0	0.75	0.5	0.25	0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해당 '등급별 평가 점수') × 세부평가항목 배점 = 세부평가항목 점수

○ (경영자율부문)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중간성과를 확인한 후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연구부문) 주요사업이나 예산·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20% 이상* 범위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컨설팅 대상을 선정 후 부처 및 연구회와 협의하여 결정

* 경영성과계획서에서 제출한 배점을 기준으로 함

○ (컨설팅 결과 반영) 컨설팅 결과에 따라 당초 경영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목표치의 수정은 허용되며, 수정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이사회 확정 필요*

* 국방과학연구소는 주무 부처의 승인으로 확정 가능

《 컨설팅 내용 (예시) 》

구분	컨설팅 내용
경영 자율	· 중간성과 확인 · 과제 착수 시점과 비교하여 현재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분석 · 기관고유임무 정립 및 세계적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단계적 목표 설정 방안 · 기관장 임기 중 최종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예산 투입 방안 · 정부정책과의 연계 강화 방안 ·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의 수정 필요성
연구 부문	· 중간성과 확인 · 연구개발사업(과제)의 기관고유임무 연계성 · 기관 내 연구개발사업(과제) 추진체계 · 중점분야 정책·기술·특허·시장동향 조사·분석 등 · 기관장 임기 중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방향 · 미래유망 전략방향 발굴 및 연구개발 추진방안 · 바람직한 기관 내 연구과제 기획·선정·관리방안 · 후속사업 또는 기술사업화 등 성과확산을 위한 전략 ·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의 수정 필요성

□ 상위평가

○ 미래부는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경영공통' 부문은 상위평가 결과 '부적절' 판정 시 자체평가기관에 재평가 요구

※ 세부 내용은 '라. 종합평가 상위평가'와 동일

라. 종합평가

□ 개 요

○ 기관장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임무중심형평가 전환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성과계획서 상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목표 달성도 및 달성 성과의 우수성, 목표 달성과정의 적절성 등

□ 평가절차

○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 및 미래부의 상위평가로 운영

- (자체평가) 부처·연구회에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자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상위평가)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

※ 자체평가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은 추후 배포 ('15년 10월까지 지침 마련 예정)

□ 자체평가

○ 기관장 취임 시 수립한 '경영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평가하고, 질적 성과 및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 (경영공통부문) 중간컨설팅평가 이후 실적에 대한 목표 달성정도 점검 및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결과와 중간컨설팅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점수 부여

- 연구기관은 성과공개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고, 부처·연구회는 성과공개시스템에 입력된 성과지표별 실적을 확인·점검하며, 필요시 관련 자료 요청

※ 연구기관 성과공개시스템에 자료 미입력시 해당 지표는 최하 점수 부여

- (연구부문/경영자율부문) 경영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성과목표별 달성도 평가** 및 **성과의 우수성, 달성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정성 평가 실시
 - 성과목표 미달성 시 미달성 사유(환경변화 등) 및 목표의 도전성, 기타 성과지표 이외에 나타나는 성과에 대하여 **종합적 점검** 실시
- ※ 목표설정이 도전적이거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성과목표 미달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정성평가 부문에 적극 반영
- 중간컨설팅평가 시 실시된 **컨설팅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

□ 상위평가

- 부처·연구회의 **평가절차·체계 점검** 및 **연구기관별 평가결과를 점검**하는 두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
- 자체평가에 대해 적절성을 점검하고 **2등급(적절, 부적절)**으로 판정
 - 부처·연구회의 평가체계가 ‘부적절’하면 전체 내용에 대해 부처·연구회에 **재평가 요구**
 - 연구기관별 평가결과만 ‘부적절’하면 부적절 기관에 대해서만 부처·연구회에 **재평가 요구**
- ※ 단순 오류사항은 미래부 상위평가에서 직접 수정
- 재평가는 부처 및 연구회가 상위평가의 검토의견과 지적사항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상위평가에서 ‘부적절’을 받으면, 해당 자체평가 결과를 불인정하고 최하등급 부여**

〈 상위평가 재평가 방안 〉

부처·연구회별 평가체계 및 체계 점검	연구기관별 평가결과 점검	재평가 여부
적절	적절	없음
적절	부적절	재평가
부적절	-	재평가

□ 최종등급 부여

- ‘**목표달성정도**’ 평가는 **달성정도를 0~100%로 산출**하고, ‘전문가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로 **5단계 등급(S-D)**으로 평가하여 평가점수 산출

〈 ‘전문가 정성적 평가’ 점수별 부여 기준 〉

등급	S	A	B	C	D
등급별 평가 점수	1.0	0.75	0.5	0.25	0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해당 ‘등급별 평가 점수’) × 세부평가항목 배점 = 세부평가항목 점수

- **종합점수는 경영·연구 부문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

〈 평가별 / 부문별 비중 〉

부 문		중간컨설팅 평가	종합평가	소 계	가 중 치
경영	공통	30%	70%	100%	0.3
	자율	-			
연구		-	100%	100%	0.7

- **종합점수에 따른 최종 등급은 5등급(매우우수~매우미흡)**으로 함

〈 종합점수에 따른 최종 등급 〉

기관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종합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 상위평가의 세부사항은 추후 제시 ('15년 10월까지 마련 예정)

◆ 유의사항 : 국가R&D수탁사업 및 출연금 사업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9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미등록된 성과는 불인정

3-3 공통기준형 평가

가. 개요 및 평가체계

- (개요) 연구기관의 '15년도 경영실적을 점검·평가
- (자체평가) 부처·연구회는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실시
 -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시, **기관별 전담위원** 배치(지정)
 - ※ 기관별 보고서, 자체평가결과, 근거자료 등을 '16.4.10까지 미래부로 제출 (자체평가보고서와 상위평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 ※ 자체평가에서 평가지표 선정 시에는 「개별법령에 근거한 각종평가의 평가 기준 개선 추진」('14.2월, 국무조정실)에 제시된 기준 참조
- (상위평가) 미래부는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상위평가 실시('16.4~5월)
 - 경미한 오류사항은 상위평가에서 **자체평가 점수를 조정하며**, 부적절 등급을 받은 자체평가 부처·연구회에 대해서는 **재평가 요구**
 - ※ 산학연 전문가로 상위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나. 자체평가 항목 및 배점

- 경영부문 평가
 - '기관장 리더십 및 책임경영'과 '인력양성 및 성과확산'의 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기관장 리더십 및 책임경영) 자율경영 및 기관장 리더십, 예산·후생복지·윤리·보안 등
 - (인력양성 및 성과확산) 인력양성 및 조직관리, 연구생태계 조성 및 소통·협력 등

※ 경영부문 평가분야 및 항목

1. 기관장 리더십 및 책임경영(50점)

평가분야	세부 평가항목	배점
1-1. 자율경영 및 기관장 리더십		(22)
1-1-1. 중점 추진과제 (자율지표)	- 기관고유임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점과제 ※ 기관장 리더십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고, 리더십 관련 사항(예: 적정 인력·예산 투입 등)을 포함	12
1-1-2. 사회현안 해결 또는 우수성과 창출 (자율지표)	- 과학기술 기반 사회 현안 해결 또는 우수성과 창출 활동 ※ 기관장 리더십과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고, 리더십 관련 사항(예: 적정 인력·예산 투입 등)을 포함	10
1-2. 예산·복지후생·윤리·보안		(28)
1-2-1. 예·결산 분야	- 예산·회계 업무의 투명성 확보 노력 - 예·결산 관련 집행의 적정성 등 ※ 예·결산 관련 감독·관계기관의 지적에 대한 조치내용 포함	4
1-2-2.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방만경영 개선 노력 및 실적	- 보수·복리후생 제도의 합리성 및 개선노력 - 총인건비 인상률의 적정성 - 노사관계 합리성 제고 등 ※ 동 항목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재부)」 중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	15
1-2-3. 직무·연구윤리분야	-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 및 노력 - 청렴성 확보를 위한 기관차원의 노력 등 ※ 외부기관 지적 대응 포함	4
1-2-4. 연구개발 보안	- 연구 보안의 체계성 등 ※ 관계기관의 보안 점검 결과 반영(대체)	5

2. 인력양성 및 성과확산(50점)

평가분야	세부 평가항목	배점
2-1. 인력양성 및 조직관리		(18)
2-1-1. 우수인력 및 여성인력 확보·양성	- 우수 연구인력 및 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실적 - 연구몰입(집중)환경 조성 노력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정책 및 노력 등 ※ 여성과기인 정규직 신규 채용비율, 여성과기인(직원) 역량 강화, 직장 내 보육지원 등 경력단절 극복 지원 노력	12

2-1-2. 조직·인사·평가 제도	- 고유업무에 맞는 조직 구성·운영 - 개인평가제도의 적절성 - 인사제도의 개방성 등 ※ 타기관중소기업 연구원 창업 포함과의 인사교류 노력 및 실적 등	6
2-2. 연구생태계 조성 및 소통·협력		(32)
2-2-1. 성과확산·활용 체계 및 사회·경제·정책 기여도 ※ 연구기관 특성에 따라 적절한 평가내용 선택 가능 ※ '성과' 자체가 아닌 지원체계, 확산·활용체계 및 이로 인한 실적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 성과관리·활용·확산 체계의 우수성 및 실적 ※ 기술사업화, 지식재산 관리 체계 등 -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및 실적 - 창업 지원체계 및 실적(관련 교육훈련 포함) - 지역조직(분원)의 (지역)산업/과학기술 기여도 - 양성(배출) 인력의 우수성 및 기여도(교육기능이 있는 기관) - 대외(공공)서비스 수준(원자력의학원 등) - 국가정책적 또는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15
2-2-2. 산학연 협력 및 융합·협동연구 촉진	- 산학연 협력 또는 연구기관 간 융합·협동연구 체계 및 실적 등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2-2-1은 별도 평가하지 않고, '2-2-2 융합·협동연구 촉진' 항목으로 통합 평가	5
2-2-3. 대외 소통·협력	- 과학대중화 활동 등 대외 소통 노력 ※ 홍보, 과학문화, 과학기술출판, 교육 등 - 전략적 국제협력 노력 및 성과 - 정부 3.0 추진기반 및 성과 등 ※ 정부 3.0 추진기반,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제공·개방,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등	8
2-2-4. 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공동활용	- 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체계의 타당성 ※ 사전 심의 등 자체 심의위원회 활동 포함 -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방안 및 실적 등 ※ 연구시설장비가 없는 기관은 타 항목 배점으로 활용	4

□ 평가내용 및 배점 조정

- (평가내용 추가) 부처·연구회는 **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평가 내용을 추가** 가능
※ 특별한 경우(보유장비가 없는 기관 등) 제시된 주요 평가내용을 수정 가능
- (배점 조정) 부처·연구회는 평가항목별 배점을 **±25% 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

□ 최종 등급 부여

- (종합점수) 항목(지표)별로 **5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 산출(100점 만점)**

《 등급별 점수 부여 기준 》

등급	S	A	B	C	D
등급별 평가 점수	1.0	0.85	0.7	0.55	0.4

- **종합점수에 따른 최종 등급은 5등급(매우우수~매우미흡)으로 함**

《 최종 등급 》

기관평가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최종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미만

다. 상위평가

- 자체평가에 대해 **적절성을 점검**하고 **2등급(적절, 부적절)**으로 판정

- '적절'하면 연구기관별 자체평가 결과를 인정하고, '부적절'하면 해당 부처·연구회에 대해 **재평가 요구**
※ 경비한 오류 사항은 상위평가 과정에서 자체평가 점수/등급 조정
- 재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에서도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해당 자체평가 결과를 불인정하고 **최하등급 부여**

3-4 평가결과 활용

가. 임무중심형 평가

- 기관평가(자체, 상위)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등 후속조치 시행**
 -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은 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래부에 제출하며, 이행 여부는 차기 평가에 반영
- (중간컨설팅평가) 원칙적으로 **중간컨설팅 결과는** 기관장 성과 연봉 및 능률성과급 지급에 **미활용**
- (종합평가) 개인에 대한 성과보상, 예산 및 기관 고유임무 등 기관 발전 지원과 연계
 - (기관장 성과 연봉, 능률성과급)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
 - 기관장 성과 연봉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정산하고, 능률성과급 지급 비율은 차기 종합평가 등급이 도출될 때까지 지속 활용
 - (기관장 성과연봉) 종합평가 때까지 연구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하고,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정산**

《 평가결과 반영 예시 》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 방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성과연봉 지급 (백만원)	최대 50백만원	50	42.5	35	27.5	20
	최대 55백만원	55	46.25	37.5	28.75	20

- (능률성과급) 종합평가 실시전까지는 '보통' 등급으로 지급하고, 종합평가 후 그 결과는 종합평가 때부터 차기 종합평가 전까지 적용

《 평가결과 반영 예시 》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능률성과급(지급률, %)	50	47.5	45	42.5	40

- ◇ (능률성과급 지급방안 예시) '13년 4분기 신임기관장 취임, 3년 주기 종합평가 실시 기관
- 가정: '14년(경영성과계획서 작성) → '15년(중간컨설팅평가) → '16년(종합평가, 우수) → '17년(경영성과계획서 작성) → '18년(중간컨설팅평가) → '19년(종합평가, 보통)
 - 능률성과급 지급 예시: '14년(45%) → '15년(45%) → '16년(47.5%, '우수'등급) → '17년(47.5%) → '18년(47.5%) → '19년(45%, '보통'등급)
- ※ 최초 평가등급이 도출되기 전에는 '보통' 등급(45%)을 기준으로 계상하며, 능률성과급의 특성상, 소급 또는 정산 방식은 미적용

- (고유임무 조정) 종합평가에서 **기관고유임무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 세부조직(센터, 연구그룹 등)은 **임무를 조정***
 - 평가결과 2번 연속 최하등급을 받으면 해당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편 검토
- * 기관고유임무, 임무체계 또는 자율지표 등에 반영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한 조직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
- (예산연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사업비에 대해 '**매우미흡**' 등급 기관은 10%, '**미흡**' 등급 기관은 5% 삭감하고, '**매우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 기관은 원칙적으로 증액
- * 연구부문 및 경영부문 중 연구와 관련된 항목
- **종합평가 결과는 평가 차년도에만 적용**하며, 나머지 해에는 '경영성과계획서' 상의 **경영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기관의 주력 사업으로 판단하여 투자 연계

◆ 기관평가 결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은 연구기관 및 공로자는 **정부포상**(기관, 개인) 추천

나. 공통기준형 평가

□ 기관평가(자체, 상위)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등 후속조치 시행

-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은 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래부에 제출하며, 이행 여부는 차기 평가에 반영

□ 평가결과는 정부 예산 편성 및 성과급 지급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

- (예산 연계) 평가 결과(연구와 관련된 항목)에 따라 주요사업비에 대해 '미흡' 등급 기관은 2%, '매우미흡' 등급은 5% 삭감하고, '매우우수' 등급 기관 및 '우수' 등급 기관은 원칙적으로 증액
- (기관장 성과 연봉, 능률성과급)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 지급
 -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성과 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능률성과급 지급 비율은 차기 종합평가 등급이 도출될 때까지 지속 활용

《 평가결과 반영 예시 》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관장 성과연봉 (백만원)	최대연봉: 50백만원	50	42.5	35	27.5	20
	최대연봉: 55백만원	55	46.25	37.5	28.75	20
능률성과급 (지급률, %)		50	47.5	45	42.5	40

◆ 기관평가 결과,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은 연구기관 및 공로자는 **정부포상**(기관, 개인) 추천

붙임 1

'16년도 중간평가 대상 사업(안)

부처	사업명	'15년 예산 (백만원)
교육부(2)	BK21 플러스사업	149,111
	국제백신연구소 지원	4,000
국민안전처(1)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	2,339
국토교통부(3)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58,329
	물관리연구	36,438
	철도기술연구사업	97,589
기상청(3)	고고도 장기체공시험기 기상센서 탑재 및 활용기술 개발	1,608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	10,573
	응용기상기술개발 연구	3,472
농림축산식품부(3)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38,250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19,867
	농촌개발시험연구	2,218
농촌진흥청(3)	작물시험연구	41,573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광역, 제주)	24,216
	축산시험연구	40,003
미래창조과학부(16)	국제 연구인력 교류	7,870
	글로벌연구실사업	22,514
	기초연구성과 활용지원 사업	20,740
	기초연구실 지원	20,500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19,515
	방송통신융합미디어원천기술개발	34,494
	범부처GigaKOREA사업	41,000
	신산업창출을위한SW융합기술고도화	20,000
	연구개발특구육성(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 포함)	70,906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	2,901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6,503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42,025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	8,403
	첨단융합기술개발	78,800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255,500
	해양극저기초원천기술개발	5,920
방위사업청(3)	고고도 장기체공 시험기	4,905
	업체주관연구개발	86,910
	연구개발성능개량	567,098
보건복지부(10)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8,955
	글로벌화장품신소재·신기술연구개발지원	10,750
	만성병관리기술개발연구	7,300
	보건의료서비스	3,000
	사회서비스	2,000
	여성건강융복합기반기술개발연구	2,700

부처	사업명	'15년 예산 (백만원)
	첨단의료복합단지기반기술구축	7,400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4,000
	한국인유전체분석기반연구	3,800
	한의학선도기술개발	10,665
산림청(1)	산림생물종연구	12,562
산업통상 자원부(19)	고고도 장기제공 시범기 기술개발	4,000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	11,627
	글로벌전문기술개발(신재생/전력/원자력)	4,509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71,502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18,330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108,859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5,755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50,209
	소재부품기술개발	286,290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55,100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	43,514
	에너지인력양성(에텍, 전력기금)	40,311
	원자력핵심기술개발	85,761
	자원개발기술개발	28,062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	6,442
	전력표준화및인증지원사업	21,467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	101,795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26,732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17,119
식품의약품 안전처(2)	의약품등안전관리	20,000
	축수산안전관리	3,201
원자력안전 위원회 (2)	원자력안전연구개발	20,300
	핵비확산및핵안보이행기술개발	6,500
중소기업청(3)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1,160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9,000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58,620
해양수산부(2)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10,768
	해양과학국제연구사업	1,766
행정자치부(2)	기록물보존기술연구	900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4,809
	기후대기환경연구	8,186
환경부(7)	생활환경연구	4,118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	19,500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18,000
	환경건강연구	8,377
	환경서비스기술개발사업	1,500
	환경자원연구	4,992
계	82개 사업	3,338,303

붙임 2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I. 개 요

□ 목 적

- 기관고유임무를 고려하여 기관의 중장기 비전과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지표를 설정

※ 관련 근거: 성과평가법 제3조, 과기분야 정출연법 제11조

□ 기본방향

- 세계적 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의 중장기 비전과 기관고유임무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정
- 기관고유임무를 대표하고 이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지표를 기관 자율로 맞춤형으로 설정

◆ '개별평가 평가기준 개선지침'(정부업무평가위원회, '13.10월)의 평가지표 검토 기준

- 대표성, 국민체감형, 왜곡유발 방지, 선제적 대응, 맞춤형

□ 주요내용

- 서두에서 '비전 및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경영 및 연구 2개 부문의 세부적 계획을 마련하고 성과목표·지표 등을 설정
- 경영부문은 정부정책에 따른 공통분야와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자율분야로 분류하여 계획 수립
 - 기관장 임기 내의 정책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정량, 정성)
- 연구부문은 출연금 사업, 수탁사업, 융합·협동연구 사업 비중을 고려하여 임무 체계(임무 포트폴리오)를 구성

※ 성과목표·지표의 달성도를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 측정 방안 제시
(9대 연구성과 DB 활용 등)

II. 경영부문 작성방안

□ 경영부문 성과목표 체계

- (공통분야) 중장기 비전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영역별 목표 및 이의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구성

- (1)조직·인사·복리후생, (2)예산·연구윤리·보안, (3)성과창출·활용·확산, (4)정책분야 등 연구기관 공통적 사항

※ 보수·복리후생관리 분야는 각 부처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관련 내용을 참고

- (자율분야) 기관장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여, 기관고유임무 또는 과학기술 현안과 관련된 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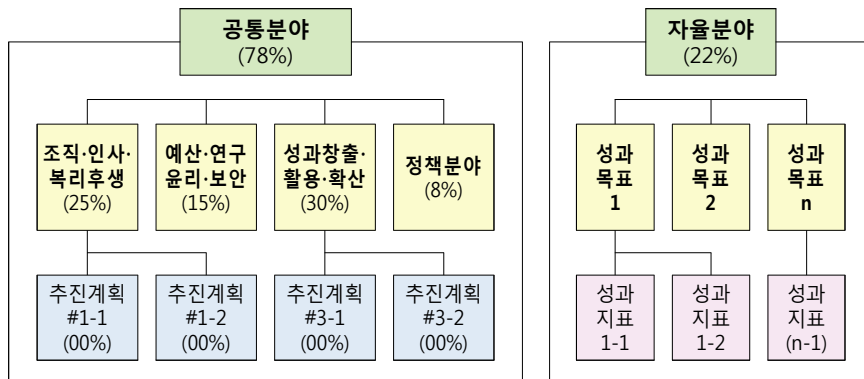
- 각각의 자율과제에 대한 성과목표·지표는 기관장 리더십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

- (영역별 배점) 표준 배점을 참고하여 미래부·연구회와 각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정(±25% 범위 이내에서 조정)

※ 영역 내 세부 배점은 '3-3 공통기준형 평가'의 세부 배점을 참고하여 자율적 설정

※ 영역별(지표별) 배점 수정 필요 발생 시, 중간컨설팅평가 과정에서 수정 가능

《 경영부문 성과목표 체계(예시) 》



《 경영부문 추진계획 기술 내용 》

영역	표준 배점	추진계획 기술 내용
〈1〉 조직·인사·복리후생 (필수 반영)	25	(1)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2) 우수 연구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 (3) 연구몰입(집중)환경 조성 노력 (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정책 및 노력(여성과학기술인 정규직 신규 채용비율, 여성과학기술인(직원) 역량 강화, 직장 내 보육지원 등 경력단절 극복 지원 노력) (5) 고유임무에 맞는 조직 구성·운영 (6) 개인평가 제도 (7) 인사제도의 개방성 확대(타 기관과의 인사교류 지원 등) (8) 보수·복리후생 관리(☞ ※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재부)」 중 관련 내용 참조, 15% 필수반영) ※ 보수·복리후생, 총인건비 인상률, 노사관리 등
〈2〉 예산·연구윤리·보안 (필수 반영)	15	(1) 예산·회계 업무의 투명성 및 집행 적절성 확보 방안 (2)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 (3) 청렴성 확보를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 ※ 연구개발 보안 분야는 관계기관 지침에 따름(5% 필수반영)
〈3〉 성과창출·활용·확산 (기관 특성과 고유임무에 따라 선택 반영)	30	(1) 성과관리·활용·확산 체계 (2) 중소·벤처기업 지원체계 (3) 창업 지원체계(관련 교육훈련 포함) (4) 지역조직(분원)의 (지역)산업/과학기술 기여 방안 (5) 양성(배출) 인력의 우수성 향상 방안 (6) 대외(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7) 국가정책적 또는 사회·경제적 기여 방안 (8) 산학연 협력 또는 연구기관 간 융합·협동연구 활성화 (9) 인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성 향상 방안 등 (동 항목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만 적용)
〈4〉 정책분야 (필수 반영)	8	(1) 과학대중화 활동 등 대외 소통 노력 (홍보, 과학문화, 과학기술출판, 교육 등) (2) 전략적 국제협력 계획 (3) 정부 3.0 추진기반 확충 (추진기반,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제공·개방,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 ※ 그 외 중점 추진 정책 관련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하에 포함 (4) 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 체계 및 공동활용 촉진 (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체계, 공동활용 촉진 방안) ※ 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5〉 자율분야 (기관장 리더십 반영)	22	○ 기관고유임무와 과학기술 현안 등에 대하여 기관장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과제 중심으로 선정·기술 ※ 기관장의 리더십 내용(예: 적정 인력·예산 투입)을 포함하여 기술 ※ 외부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내용은 지양하고 기관과 기관장의 노력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지표 설정

□ 성과지표 설정 및 단계적 목표치 설정

- (공통분야) 추진계획은 기관 운영방향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서술
 - 공통분야에서는 **성과지표 생략 및 정성적 기술 가능**
 - ※ 연구개발 보안 분야는 관계기관의 별도 지침에 따라 평가 실시(평가비중: 5%)
 - ※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분야는 부처·연구회에서 별도로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면, 해당 문건명을 표기하고 그 주요내용만 요약 제시하는 방법도 가능
- (자율분야)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가중치 부여
- (연도별 목표치 설정) 성과달성 목표치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향상**되도록 제시
 - ※ 임기 마지막 연도의 경우에도 연말을 기준으로 목표치 제시
 - ※ 중간컨설팅평가 및 종합평가 시점에서는 연도별 목표치를 고려하여 평가(중간/종합 평가 시점에서의 목표치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Ⅲ. 연구부문 작성 방안

□ 연구부문 목표체계 및 대상

- 연구부문에서 비전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목표와 전략목표를 구체화하는 성과목표·지표 체계로 구성



□ 연구부문 성과계획의 범위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과제)을 포함하되, 필요 시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제외 가능
 - (출연금 사업) 기관의 고유임무 수행을 위하여 기관 차원에서 연구기획 및 과제 선정을 추진하는 사업
 - ※ 타 기관과의 융합·협동연구 사업도 포함
 - (수탁사업/과제) 정부 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 등에 의한 수탁연구사업(과제)
 - ※ 국회에서 예산 확정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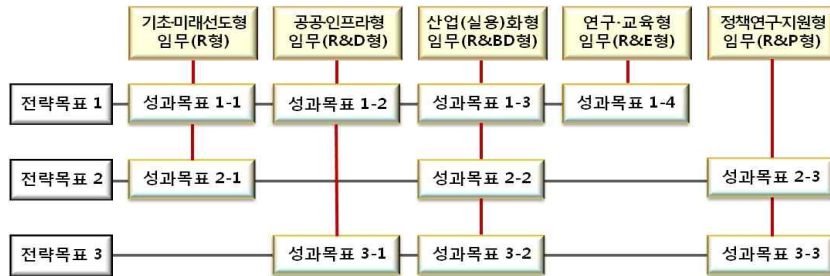
□ 목표 및 지표의 설정

- (전략목표) 기관의 임무와 비전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기관이 중점 추진**해야 할 목표*를 제시
 - * 기관의 고유임무와 논리적 연계성을 갖도록 설정
- (성과목표) 기관장 임기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로, 1개의 성과목표에 1가지 임무유형***을 매칭
 - * ①기초·미래선도형(R형), ②공공·인프라형(R&D형), ③산업화형(실용화형) (R&BD형), ④연구·교육형(R&E형), ⑤정책연구·지원형(R&P형)
- (성과지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 사업(과제)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표를 설정**하되, **질적 우수성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사용
 - ※ 1개의 성과목표 당 2개 이상의 지표 설정 시에는 대표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가중치 부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14.12,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준용

□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연구의 연속성과 성과정보 통계와의 연계를 위해 **매 연도말을 기준으로 제시**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측정 방법**을 제시(가능한 외부에 공인된 성과물 또는 통계자료를 활용)

《 고유임무와 연구부문 목표체계도와의 관계(예시) 》



《 임무유형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 기준 》

임무 유형	유형별 성과지표 설정 시 고려사항
기초·미래선도형 (R형)	- 창조적 지식창출 또는 미래 신산업창출을 위한 연구 ●(주요성과분야)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
공공·인프라형 (R&D형)	- 사회현안 해결 및 국방목적 등 국책사업 또는 연구지원 인프라 분야에 대한 연구 ●(주요성과분야) 인프라 성과, 기술적 성과, 사회적 성과 및 과학적 성과
산업화형(실용화형) (R&BD형)	-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는 연구 ●(주요성과분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및 과학적 성과
연구·교육형 (R&E형)	- 인력양성, 전문 교육 훈련 등 이공계 관련 우수 인력지원 육성에 관련된 연구 및 활동 ●(주요성과분야) 사회적 성과, 과학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
정책연구·지원형 (R&P형)	- 국가정책연구 및 정책지원 ●(주요성과분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및 기술적 성과

□ 항목별 가중치 부여

- 전략목표·성과목표별 가중치를 설정하되, 배점의 총합이 100점이 되도록 설정
- 기관의 중장기 비전 및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5대 임무유형별 비중(임무 포트폴리오)을 제시
- 기관과 담당부처·연구회가 협의하여 기관 특성에 따른 출연금사업과 수탁사업(과제) 간 평가 비중을 사전에 설정
 - ※ 사업예산 변동에 따른 비중 조정은 국회에서의 예산확정 또는 중간컨설팅평가 시 가능
- 출연금 사업은 기관 단독연구와 융합·협동연구 간 비중을 구분하여 제시
 - ※ 고려사항 : 출연금 사업과 수탁사업 간 예산 및 참여인력 비중, 기관비전 및 고유임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

《 항목별 배점 부여 예시 》

◆ 전략목표 간 비중

전략목표	#1	#2	#3	합 계
비 중	40	35	25	100

◆ 고유임무유형 간 비중(임무 포트폴리오)

임무유형	기초·미래선도	공공·인프라	실용화	연구·교육	정책연구·지원	합 계
비 중	25	15	50	-	10	100

◆ 사업의 유형별 비중

사업유형	출연사업		수탁사업(과제)	합 계
	단독연구	융합·협동연구		
비 중	45	15	40	100

	전략목표1			전략목표2			전략목표3			계	출연		
	출연		수탁	출연		수탁	출연		수탁				
	단독	융합		단독	융합		단독	융합			단독	융합	
기초·미래 선도형	성과 목표 (1-1)		성과 목표 (1-2)					성과 목표 (3-1)		25	12	3	10
공공· 인프라형					성과 목표 (2-1)	성과 목표 (2-2)				15	-	4	11
산업화형 (실용화형)	성과 목표 (1-3)	성과 목표 (1-4)	성과 목표 (1-5)	성과 목표 (2-3)			성과 목표 (3-2)		성과 목표 (3-3)	50	27	8	15
연구·교육형										-	-	-	-
정책연구· 지원형				성과 목표 (2-4)		성과 목표 (2-5)				10	6	-	4
계	17	8	15	16	4	15	12	3	10	100	45	15	40
	40			35			25						

붙임 3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내용

□ 경영부문 (공통분야)

영역	점검 내용	점검결과		
		적절	일부 보완	수정
<1> 조직·인사· 복리후생	(1) 필수 기술내용* 반영 여부			
	(2) 구체적 달성목표 및 연도별 목표치 제시 여부			
	(3) 목표의 근거 제시여부			
<2> 예산· 연구윤리· 보안	(1) 필수 기술내용* 반영 여부			
	(2) 구체적 달성목표 및 연도별 목표치 제시 여부			
	(3) 목표의 근거 제시여부			
<3> 성과창출· 활용·확산	(1) 필수 기술내용* 반영 여부			
	(2) 구체적 달성목표 및 연도별 목표치 제시 여부			
	(3) 목표의 근거 제시여부			
<4> 정책분야	(1) 필수 기술내용* 반영 여부			
	(2) 구체적 달성목표 및 연도별 목표치 제시 여부			
	(3) 목표의 근거 제시여부			

* 필수 기술내용은 붙임 2(경영계획서 작성지침)의 < 경영부문 추진계획 기술 내용 > 참조

□ 경영부문 (자율분야)

영역	점검 내용	점검결과		
		적절	일부 보완	수정
자율지표	(1)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 기관 고유임무와의 부합성, 기관장 리더십 반영			
	(2) 구체적 성과지표의 제시 여부			
	(3)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 및 근거 제시여부			

□ 연구부문

영역	점검 내용	점검결과		
		적절	일부 보완	수정
연구부문	(1) 5대 임무유형에 따른 임무 포트폴리오 구성 여부			
	(2) 고유임무와 관련된 수탁사업/융합·협동연구 사업이 있는 경우, 반영 여부			
	(3) 질적 성과지표*의 활용 여부 (논문, 특허 등에서 양적성과지표의 배제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14.12) 참조			
	(4) 연도별 목표치 및 근거 제시여부			

〈 의안 소관부서명 〉

미래창조과학부 평가혁신국 성과평가정책과	
담당자	정건영 사무관
연락처	전 화 : 02-2110-2712 E-mail : jky777@msip.go.kr